

정 관

재단법인 인천서해구복지재단

재단법인 인천서해구복지재단 정관

제정	2024.	02.19	정관	제1호
경정	2024.	05.03	정관	제2호
일부개정	2026.	03.18	정관	제3호
일부개정	2026.	07.01	정관	제4호
일부개정	2026.	08.10	정관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인천서해구복지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서해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근거) 이 재단은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69번길 17, 4층 복지어울림센터 내에 둔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1” 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9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감사보고서

제14조(임원보수) 상임이사의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비상임)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9명(이사장, 상임이사 포함)(일부개정 2026.7.1., 2026.8.10.)
4. 감사 2명

② 상임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선임직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선임팀장이 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와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구의 복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이사(복지업무소관 국장)
 2.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재단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임원은 재단의 위·수탁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과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3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

제26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둔다.
- ③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구에 귀속한다.

제32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구보 또는 관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이나 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3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직제 ·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임 ·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정관 제1호, 2024.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설립받기인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 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받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받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 정관 제3호, 2026.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정관 제4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정관 제5호, 2026.8.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단법인 서해구 복지재단 재산목록

재산종류	자산분류	내역	평가액(원)	비고
기본재산	예금	서해구 출연금	2,000,000,000	
합계			2,000,000,000	